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최현철

전화 02-3219-4420/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4. 7. 19.(금)

스캠코인인 퀴비코인을 발행·판매하여 300억원대 편취한 가상자산 사기 사범 4명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유명 연예인 甲의 이름 또는 별칭을 써서 '甲 코인'이라고 불리는 '퀴비코인(QBZ)' 사건을 수사한 결과,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편취한 퀴비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을 오늘(7. 19.)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

- 퀴비코인 사건은 △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사업의 외관만을 갖춘 채 코인 발행, △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코인브로커를 동원하여 거래소에 상장, △ 시세조종과 허위 홍보 기사를 통한 코인 판매, △ 코인 다단계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 △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코인과 해외 발행재단을 일괄 처분한 후 위 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의 단계를 거치면서 합계 3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스캠코인 사기의 종합판'인 사실을 밝혀냄

- 상장 과정에서 시세조종 계획을 숨기기 위해 거래소에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도 규명하고,

- 발행업자 A가 퀴비코인 매각대금 중 56억원을 횡령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과 차명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내어 신속히 범죄수익 환수 조치(몰수·추징 보전 청구)하였음

-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오늘)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할 것임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

	피고인	당시 지위 및 역할	처분
1	A(45세, 구속)	퀵코인 개발업체 Q 실운영자 (스캠코인 발행·허위기사 유포·시세조종 물량 제공 및 거래소 허위자료 제출 등)	7. 19. 구속기소
2	B(40세, 구속)	퀵코인 개발업체 Q 대표 (스캠코인 발행·허위기사 유포·시세조종 물량 제공 및 거래소 허위자료 제출 등)	상동
3	C(39세, 구속)	전자지갑 서비스업체 H 대표 (허위기사 유포·시세조종 및 거래소 허위자료 제출 등)	상동
4	D(51세, 구속)	스캠코인 전문처리 조직의 마케팅 담당 간부 (허위기사 유포·시세조종 등)	상동

나.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B·C]

- '20. 2.~3. 퀵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코인 판매 대금만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허위의 홍보기사 배포,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후 퀵코인 2.3억개를 매도하여 151억원 편취[사기]
- '20. 2.~10. 乙 거래소에 허위의 코인배분 현황 자료 등 상장심사자료를 제출하여 퀵코인을 상장하고, 시세조종에 동원된 차명 계정주들 명의의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차명 계정에 대한 乙 거래소의 이용중지조치가 해지되도록 함으로써 乙의 상장심사 및 이상거래감시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 [피고인 A·B·D]

- '21. 1.~4. A·B는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 S에게 퀵코인 전부와 해외 발행 재단을 일괄 처분한 후 퀵코인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S, 그의 심복 D와 함께 퀵코인 13억개를 매도하여 150억원 편취 [사기]

● [피고인 A]

- '20. 10.~'21. 1. 퀵코인 발행재단 소유의 퀵코인 매각대금 중 56억8,000만원을 임의로 유용 [특경법위반(횡령)]

다. 수사 경과

- '23. 12. 수사착수
- '24. 3.~4. A, B, C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
- '24. 5. 10. A, B, C 구속영장 법원 기각
- '24. 7. 5. A, B, C 구속(7. 2. 구속영장 재청구), D 체포
- '24. 7. 7. D 구속

2 수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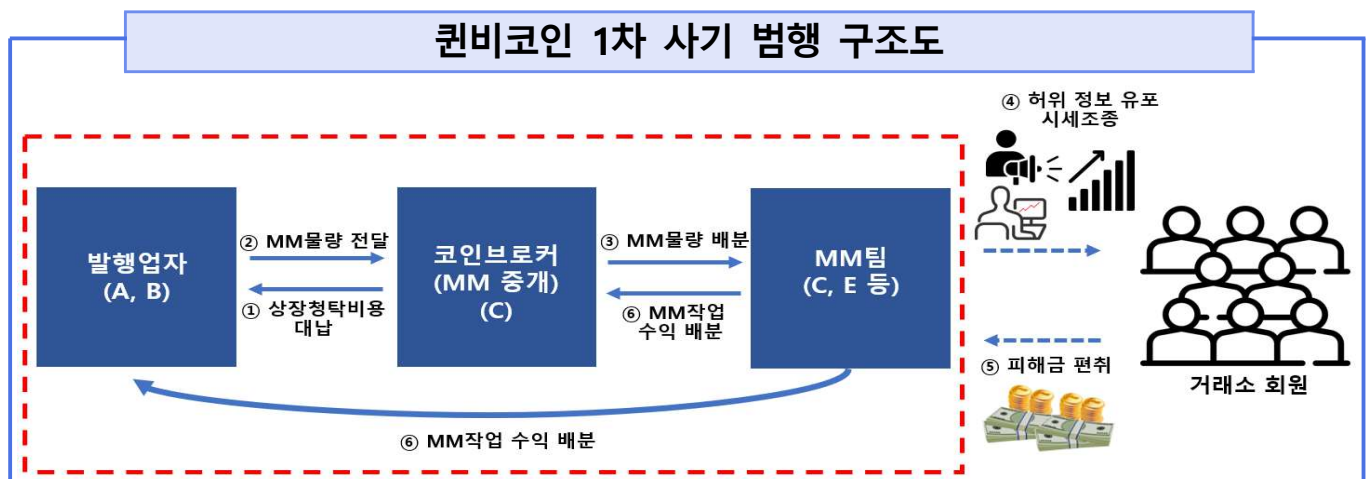
-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코인브로커를 통한 불법적 코인 상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상장 이후에는 허위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거래소 회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편취함으로써 서민 투자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인브로커가 상장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있던 퀴비코인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음

3 수사 결과

가. 이 사건 사기 범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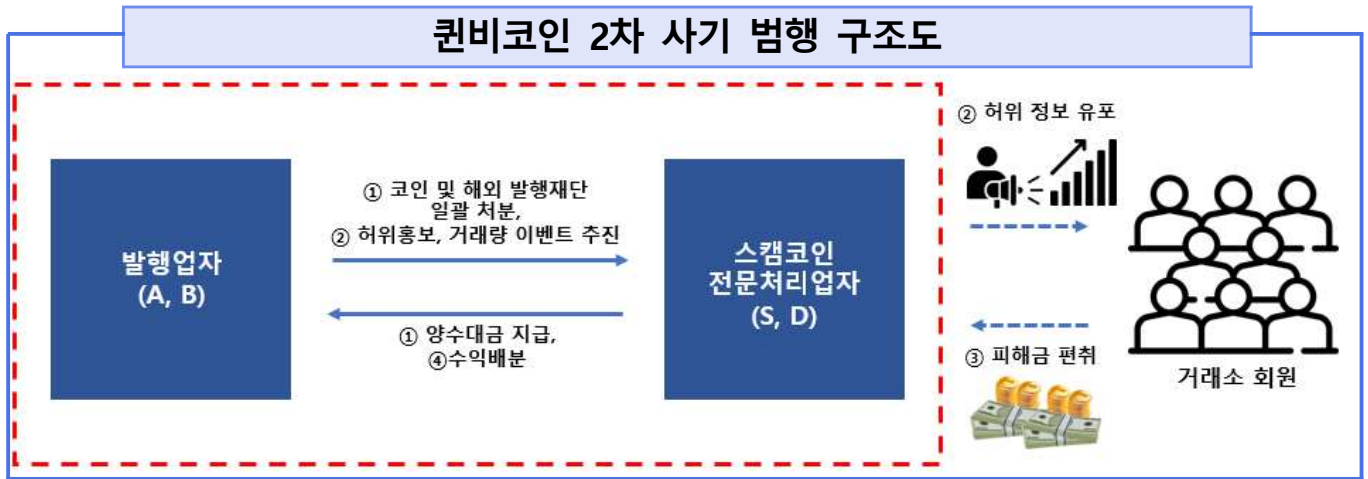
- 2020. 2.~3. 상장비용 및 상장보증금을 대납한 코인브로커(C)의 주도로 퀴비코인 발행업자(A, B)가 시세조종업자(E) 등과 결탁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거래소 상장 후 시세조종을 통해 퀴비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매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약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편취하였음(1차 사기 범행)

퀴비코인 1차 사기 범행 구조도



- 2021. 3~4. 발행업자(A, B)는 남은 코인 전량과 해외 발행재단을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S, D)에게 일괄 매각한 후 허위 홍보기사 배포, '거래량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의 퀴비코인 판매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 약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하였음(2차 사기 범행)

*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내 특정코인을 거래한 거래량에 따라 거래 고객에게 포상(특정 코인 자체 또는 BTC 등을 지급)을 지급하는 이벤트



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구조

- 乙 거래소 내부사정에 밝은 코인브로커(C)와 발행업자(A, B)는 시세조종 과정에 차명계정을 이용하여 코인을 대량 매각하려는 계획을 숨기고자 거래소에 허위의 '코인배분 현황' 자료, 위조된 '프라이빗 세일'* 계약서를 심사자료로 제출하여 위계로써 퀴비코인을 상장시켰음(상장심사 업무 방해)

*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코인 할인판매

- 乙 거래소가 퀴비코인이 특정 계정(피고인들이 시세조종 작업에 동원한 차명 계정)에 집중적으로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자, 차명 계정주들이 코인거래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약속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여 위계로써 거래소의 이용중지조치를 해지케 하였음(이상거래감시 업무 방해)

다. 퀴비코인 사건에서 확인된 특징적 사실

- 유명 연예인을 사업성 홍보에 활용하여 코인가격 부양
 - 사업아이템이 결정되기 전 시점에 유명 연예인 甲이 소액을 투자하여 퀴비코인 발행재단을 공동설립한 점을 이용하여 '甲이 투자할 정도로 사업성을 갖춘 업체'라는 내용으로 甲을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장 초기 급격한 코인가격 부양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되었음

● **코인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코인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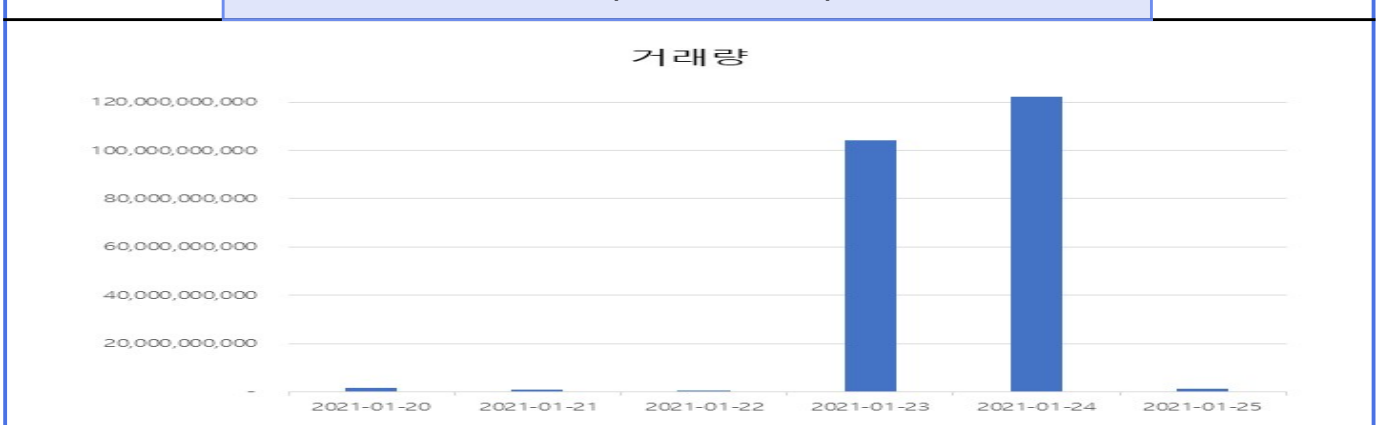
- 퀴비코인 상장 과정에서 乙 거래소와 관련된 업체 대표인 코인브로커(C)*가 퀴비코인의 상장 결정 사실, 상장 시기 등 거래소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코인 발행업자(A, B)에게 제공하는 등 퀴비코인 상장에 은밀히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C는 발행재단을 대신하여 거래소에 상장비와 상장보증금을 대납하고, 발행업자 A, B에게 시세조종업자 E를 소개하였으며, E의 시세조종 작업에도 직접 가담하기도 함

● **코인 판매과정에서 거래소 '거래량 이벤트'를 적극 활용**

- A, B, S, D는 진위 판단이 어려운 해외법인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 허위·과장 홍보기사를 배포함과 동시에 이를 명목으로 거래소 '거래량 이벤트'를 추진하여 거래소 회원들의 퀴비코인 거래량을 폭증 시킴으로써 그 기회에 퀴비코인을 대량 판매하는 신종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음

乙 거래소 거래량 이벤트 시(2021. 1. 23.~24.) 퀴비코인 거래량 변화



● **남은 코인과 해외 발행재단을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고가에 일괄 매각함으로써 스캠코인에 의한 '떡튀' 사기 범행 완성**

- A, B는 퀴비코인 상장 직후인 2020. 2.~3.경 퀴비코인 2억3,000만개를 판매하여 151억원 상당을 편취함으로써 수십 억원의 수익을 챙겼고, 이후 2020. 10.경 유명 코인다단계업자인 L을 통해 퀴비코인 5억4,000만개를 판매하여 21억원 상당을 벌어들였음

- 그리고 **2021. 1.경**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 S에게 남은 코인 전량과 해외 발행 재단을 일괄 매각하여 매각대금 50억원을 챙긴 다음, **2021. 1.~4.경** S, D의 퀴비코인 판매에 가담하여 150억원 상당을 편취함으로써 추가로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는 등 **1여 년 만에 스캠코인에 의한 소위 '먹튀' 계획을 완성하였음**

- **A의 56억원 횡령 범행 밝혀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청구**

- 발행업자 A가 법인 소유인 퀴비코인 매각대금 중 56억원 상당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과 A가 그 범죄수익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외제차를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어, 이들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A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4 7. 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 7. 19.)에 대비하여 올해 4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같이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가상자산시장 질서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워크샵(총 6회)**을 기획, 진행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 협력을 강화하였음**
- 또한, 합동수사단은 최근 이 사건(퀴비코인 사건) 외에도 스캠코인인 P코인을 발행하여 839억원 상당을 편취한 '**코인왕**' 丙(속칭 '**존버킴**')을 구속(7. 18.)하고, 丙이 은닉한 **합계 207억원 상당의 하이퍼카·슈퍼카 13대를 압수(6. 14.)**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파괴자들을 엄단하고 있음

5 향후 계획

-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여 박탈할 예정임**
-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7. 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더욱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겠음** ☑